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72 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 박재호·김병기·김정호

박성민・박 정・양정숙

오기형 · 오영환 · 오영훈

이수진 • 이용빈 • 정춘숙

주철현ㆍ허 영ㆍ홍성국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총회 선출, 대의원 선출,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 출하도록 하고,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%의 금고가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,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 서 대의원과 직·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 한 측면이 있고,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 또한, 간선제 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, 임원선거 관리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 (안 제1 2조, 제18조제5항 및 제6항, 제23조의2, 제64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제3호 중 "선임(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)과"를 "선임과"로 한다.

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.

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,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있다.

제23조의2 중 "위탁할 수 있다"를 "위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64조의2제1항 전단 중 "제18조제5항 및 제6항"을 "제18조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제18조제8항"을 "제18조제7항"으로, "제9항"을 "제8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(제6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총회) ① ~ ③ (생 략)	제12조(총회) ① ~ ③ (현행과		
	같음)		
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	4		
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임원의 <u>선임(이사장의 선임</u>	3 <u>선임과</u>		
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			
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			
<u>한정한다)과</u> 해임			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		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		
제18조(임원의 선임 등) ① ~ ④	제18조(임원의 선임 등) ① ~ ④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	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		
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, 다음	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		
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	하되,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		
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	결정한다. 다만, 이사장의 후보		
여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의	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		
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	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		
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	장을 선출할 수 있다.		
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.			
<u>1. 총회에서 선출</u>			
2. 대의원회에서 선출			
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. 이 경우 투표의 방법· 절차,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.
- ⑥ 이사장에 대한 제5항 각 호 | <삭 제> 의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 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다만, 과반수 득표 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 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 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 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2. 제5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출 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⑦ ~ ⑨ (생 략)

제23조의2(선거관리의 위탁) 금고 제23조의2(선거관리의 위탁) ----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

<u>6</u>	\sim	<u>8</u>	(현행	제7항부터	제9
항기	ゕ゚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゙゚゚゙゙゙゙゙゙゚゚゚゙゙	의	같음)		
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4조의2(임원의 선출과 임기 기 등)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, 회장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이사장"은 "회장"으로 본다.

② ~ ⑤ (생 략)

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<u>제18조</u> <u>제8항</u> 본문, 같은 조 <u>제9항</u>, 제 19조제8항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·제12호의2·제13호·제13호의2·제 14호·제15호,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21조의2, 제22조, 제23조, 제23조의2, 제24조, 제2 5조,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"이사장과 부이사장"은 "회장, 부회장과 상근이사"로, "감사"는 "감사위원장"으로 각각본다.

⑦ ~ ⑩ (생 략)

위탁하여야 한다.
등) ①
제18조제5항
<u>~11044710 6</u>
 () (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제18조</u>
<u>제7항제8항</u>
·
⑦ ~ ⑩ (현행과 같음)